

규정 /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DIA-RA, DIA-RB, ECK, ECK-RA, IQD, IQD-RA, IID-RB, JFA, JFA-RA, JGA
 책임 부서: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 Di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학과 외 활동 및 협동 교과 활동 Extracurricular and Co-curricular Activities

I. 목적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IQD, *학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의 학교 수준 절차를 수립합니다.

학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ECA)을 협동 교과 활동(co-curricular activities-CCA)과 구별하여 정의합니다.

중, 고등학생의 학업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ECA)과 협동 교과 활동(co-curricular activities-CCA)의 상황을 책정합니다.

II. 배경

교육위원회는 학과 외 활동 참여가 학생들의 정기적인 출석 및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동아리, 창작 및 공연 예술 그룹, 교내 및 학교 대항 스포츠 등 교실 밖에서의 또래 및 성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과 전반적인 학업 성취에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과 외 외 활동 참여가 학업기준에 의해 유지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학업 자격 요건이 학생이 학교에 계속적으로 연결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에의 참여를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III. 정의

- A. *A 협동 교과 활동(co-curricular activity -CCA)*은 교실, 수업 시간 또는 수업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적이 매겨진 과목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든 학생이 수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참여를 해야 합니다. CCA 에는 현장 학습이나 Lathrop E. Smith 환경 교육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 B. *학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ECA)*은 학생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MCPS 에 등록된 학생에게 열려 있는 자발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 C. *MCPS 소유지(property)*는 MCPS 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땅과 MCPS 가 소유, 운영 또는 임대하는 버스 및 MCPS 자동차, 학생이 참여하는 MCPS 의 모든 시설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구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MCPS)의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에 명시된 행동 개입 조치/중재는 MCPS 소유지/부지의 모든 학생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D. *학교 후원(School-sponsored) ECA* 는 학교장/지정자(예: ECA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학교 후원 활동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각 학교 후원 ECA 는 MCPS 직원으로서 학생 감독 및 본 규정과 협상된 계약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IV. 학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의 학업 요건

- A. 모든 ECA 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 금지, 형평성 및 문화적 능숙도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명시된 실제 또는 인지된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여 차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으며, 활동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MCPS 학교는 모든 등록 학생에게 열려 있는 ECA 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현재의 필요와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사와 경험을 넓히는 활동을 탐구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3.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학생의 ECA 참여를 제한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 a) 징계 규정 위반

b) 활동 당일 무단결석

B. 학업 요건

1. ECA 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를 위한 학업 자격 요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a) 학업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 주 또는 지역 기관(예: 전국 우등생 협회/National Honor Society)의 제휴 기관인 ECA 는 제휴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학업 자격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b) 학교 대항 운동 경기의 자격 요건에는 학업 자격이 포함될 수 있으며, MCPS 규정 IQD-RA, *학교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 자격 (Academic Eligi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Interscholastic Athletics)* 및 MCPS 규정 IQB-RA, *학교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학업 자격(Academic Eligibil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Interscholastic Athletics)*에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연령, 출석, 등록 및 건강 요건도 포함됩니다.
2. 학업 자격 요건은 제휴 기관에서 명시한 추가 요건과 함께 사전에 공지되어야 합니다.

V. 절차

A. 학과 외 활동 프로그램 수

1. 학사연도 초, 학교장/지정자는 학생들에게 학교 ECA 에 참여하거나 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알려야 합니다.
2. MCPS 규정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따라, 학생과 MCPS 교직원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MCPS 규정(이하 "MCPS 규칙")을 준수하는 활동을 하는 ECA 를 조직하거나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학교내 ECA 전체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많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B. 프로그램 운영

1. 학생은 현재의 필요와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활동에 참여하고 흥미와 경험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탐구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일부 학생은 더 많은 참여하기 위한 격려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학생은 ECA 에의 과도한 참여에 대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각 학교는 학생 ECA 프로그램의 일정을 결정합니다. ECA 는 수업 시간 외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내 비수업 시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 활동 프로그램 일정을 계획할 때는 버스로 이동하는 학생 수와 도보 통학 가능 지역 내 학생 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대부분의 ECA 를 수업 시간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보 거리 내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와 같이 방과 후 학생 활동이 전체 프로그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3. 학교장/지정자는 학교 후원 ECA 참여에 필요한 비용(예: 특수 의류 또는 장비)에 대한 독립된 활동 기금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각 학교 후원 ECA 의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경우 기금을 확보하여 학생이 비용 때문에 참여를 거부당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IAF 기금으로 지원되는 ECA 경비는 MCPS 규정 DIA-RA, *재정 운영/독립 활동 기금 회계(Accounting for Financial Operations/Independent Activity Fund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C. 학과 외 활동 후원자

1. 각 학교 후원 ECA 에는 MCPS 직원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후원자는 교장이 관련 학생들과 협의하여 MCPS 규정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따라 적절하게 임명하며, 지역 부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a) ECA 후원자의 역할은 교장을 대신하여 활동 및 MCPS 규정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후원자는

그룹 구성원의 MCPS 규정 위반 사항을 교장/지정자에게 알려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 b) ECA 후원자 임명에 대한 수당 및 기준은 협상된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2. Regulation JFA-RA, 학생 권리 및 책임(*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후원이 아닌 학생 주도 클럽은 학교 후원 클럽으로 간주되거나 대표될 수 없습니다.

- a) MCPS 직원은 이러한 회의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MCPS 직원은 안전을 위해 감독할 수 있습니다.
- b)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룹 회의를 지휘, 진행, 통제하거나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 c) 학교 후원이 아닌 학생 회의 및 클럽에 관한 추가 조항은 JFA-RA 규정을 참조합니다.

D. 프로그램 평가

매년 학교장/지정자는 ECA 후원자 및 학생과 협력하여 ECA 프로그램이 교육위원회 정책 IQD, *학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이 규정 및 장학금 후원자를 규정하는 협상 계약 조항과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E. 협동 교과 활동 규정

1. MCPS 성적 평가 및 출석 절차는 협동 교과 활동이 필수 과목에 적용됩니다.
2. 협동 교과 활동이 요구되는 과목의 경우, 수업 계획서에 협동 교과 활동이 의무적인 수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 a) 과목 교습자는 협동 교과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학생들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b) Di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사전 통지 기간 및 성적 평가 절차의 유연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3. 학생은 평가 및 성적이 매겨지는 협동 교과 활동이나 행사(예: 밴드,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극 또는 무용 수업의 리허설 또는 공연) 참여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 *MCPS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CPS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행정사: 이전 규정 제 520-2 호, 1979 년 3 월 23 일; 1986 년 12 월 개정; 2020 년 6 월 8 일 비실질적 개정; 2025 년 6 월 27 일 개정. 2025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디렉터리 정보에 대한 기술적 업데이트 포함.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와 연방, 주, 지역 법에 있는 요건은 이 서류와 갱신판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서류의 내용과 참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갱신된 최신 정보는 다음 온라인판을 참조하십시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하십시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하십시오.